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3703-4550/ 전송 3703-5526
 복무조사담당관실 담당관 배홍수 서기관 윤태중 담당자 김병훈

문서번호 복무 12140-

시행일자 1999. 6. 14. (년)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취 급		행정자치부 장 관	국무총리
보 존		시	
차 관	김홍수	김홍수	
복 무 감사관	박상근		
담당관	배홍수		
서기관	윤태중		협 조

제 목 『공직자 준수사항』 시달(국무총리지시 제1999-13)

1.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주변관리 소홀·근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나 기본자세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여 공직의 권위가 실추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개선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이를 위하여 불임과 같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하여 시달하니, 각부처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공직분위기 쇄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직자 준수사항 1부.
2. 국무총리 당부말씀 1부. 끝.

국무총리

받는곳 : 가, 나, 다

공직자 준수사항

I. 10대 준수사항

-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는 행위 금지
- 2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 직무와 관련된 단체·업체 등에 청첩장·부고장·전화·FAX 등 고지방법을 불문하고 경조사를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경조사는 가족행사로 치루어야함.
 - 간부급 공무원의 축·조의금 접수 금지
 - 축·조의금을 받을 수 없는 간부급 공무원 이라함은 직급에 관계없이 각급기관의 과장급이상을 말함.
 - 간부급을 제외한 공무원은 축·조의금을 수수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경·조사시 방명록의 비치를 금함.

3 경조사 ·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 경조사 및 인사이동시는 축전 · 조전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

4 퇴직 · 전근시에 전별금 · 촌지를 받는 행위 금지

5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은 가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함.
 -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받은 선물은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선물을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함.
 - 본인이외의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는 선물도 금지함.

6 본인이외의 가족 · 친지 등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공직자 본인과의 동승은 허용

7 호화호텔·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행위 금지

- 공직자의 분수에 맞지않는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고급호텔 등에서의 결혼식은 금지함.

8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등 출입금지

- 공직자의 보수수준에 어울리지 않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호화음식점·의상실의 출입을 금지하며
-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도박장·룸싸롱·환락업소 등의 출입행위도 금지함.

9 고위공직자 부인모임 전면해체

- 기존의 모임은 전면 해체하고, 자선·봉사활동은 기존의 사회봉사단체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권유

10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 금지

Ⅱ. 행정사항

1 각급기관 실천

-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 준수사항을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하여 실천결의대회를 개최(간부급은 결의서에 서명하여 제출)
- 공직자 준수사항을 산하기관·단체에 적극 전파·확산

2 실천확인 및 조치

- 각급기관의 감사부서는 공직자 준수사항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 위반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등 적절한 제재조치

행 정 자 지 부

우110-760/ 종로구세종로77-6종합청사1109호/ 전화3703-4550/ 전송3703-5526
 복무조사담당관실 담당관 배홍수 서기관 윤래중 담당자 김병훈

문서번호 복조 12140 -62

시행일자 1999. 6. 19.(년)

수 신 받는곳 참조(복조담당관실)

참 조

선결				지			
접	일자	1999. 6. 19	시	결	조희관	김병훈	
수	번호	3948	재	상	의관	김	
처리과	홍-122		공	라	공	홍	
담당자	김병훈		람	사	우관	김	

제 목 축·조의금 및 화환·화분관련 기준 통보 ※, 각의대위 민선 대위 188안 검토. 1.12.1999

1. 복무 12140-25호('99.6.14)와 관련입니다.

2.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위호로 시달한 『공직자 준수사항』 (국무총리지시 제1999-13호)중 경조사시 축·조의금, 경조사·이취임시 화환·화분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여러기관으로 부터 문의가 있어 그 기준을 통보하니, 향후 『공직자 준수사항』 이 엄격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축·조의금 및 화환·화분관련 기준 1부. 끝.

행 정 자 지 부 장 관

받는곳 : 가, 나, 다

축·조의금 및 환환·환분관련기준

<축·조의금>

-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 단체·업체 등에 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행위 금지
 - 본인은 들른 직원을 통한 경조사 고지행위 금지
 - 신문 등 언론매체의 부음난을 통한 고지는 가능
영 특 26
- 간부급 공무원은 축·조의금 접수 금지
 - 간부급 공무원은 중앙 및 지방 각급기관의 과장이상 공무원을 말함.
 - 축의금 접수 및 방명록 비치 금지
 - 조의금
 - 1) 상주가 간부급 공무원 1인인 경우는 조의금 접수 및 방명록 비치 금지
 - 2) 형제자매중에 간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조의금 접수는 금지
- 기 타 : 공무원의 축·조의금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화환·화분 등>

- 경사·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금지
- 조사시
 - 1) 상주가 공무원 1인인 경우는 금지
 - 2) 형제자매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환·화분접수는 금지
- 축전·조건 등으로 경조를 표하도록 권장

<기 타>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및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 기관 실정에 맞도록 실천사항을 마련할 것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지침 시달

국무조정실 홍현선 과장
'99. 7. 6, (구내 2184~5)

정부와 여당은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6. 14부터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보완지침을 시달키로 하였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보완사항

- (1)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금지는 모든 공무원에게 당초대로 시행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축·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는 공직자의 범위는 1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이상으로 하되
 - 접수금지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문제는 앞으로 이행실태와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될 「공직자 행동강령」 마련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2) 축·조의금을 주는 경우의 금액은 공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행정자치부의 「경조사관행 권장지침」('96. 5. 4) 시달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3만원 이하로 한다

(3)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 및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는 계속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기관단위의 문화행사시 및 국가 공식 행사시 화환설치는 허용하며, 본인 사망시 소속 기관장 명의의 조화는 1개에 한하여 허용한다

- 이에따라 정부는 금번 보완사항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지침 형식으로 시달하여 즉시 시행키로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직무 및 공·사생활에 관련된 「공직자 행동강령」을 「부패방지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